

아동(만11세) 성폭력 손해배상 1억 원

## 1. 사안의 개요

피고(피고인)는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(만 11세)를 알게 된 후 자신을 “주인님”이라고 부르게 하고, 스카이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{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및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 대한 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},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으며(이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 대한 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), 위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무음으로 작동시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및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{이상 아동·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}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안

## 2. 관련 법리

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, 피해자의 나이,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,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억 원으로 정한다.